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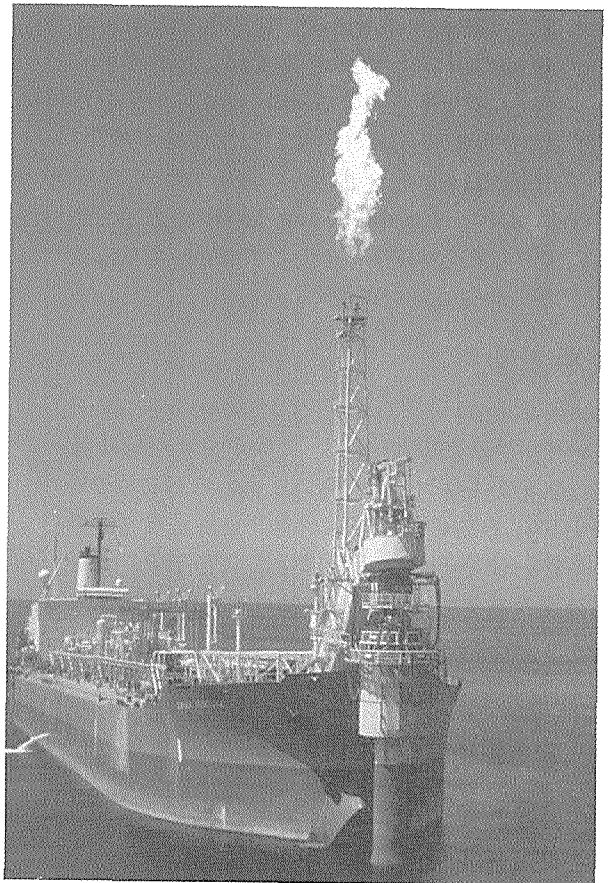
호주의 석유개발

1983년에 부로 승격된 이후로 노동부의 일련의 조치는 호주경제를 보다 효과적이고 활기차게 또한 경쟁에 강하게 만드는 효과적인 수행능력을 보여주었다.

특히, 거시경제정책과 미시경제개혁을 통하여 정부는 투자에 활력을 주는 분위기를 유도해갔다. 현재 이 자율과 인플레이션은 낮은 수준에 있고, 관세는 줄어들었으며 생산품이윤은 많고, 운영경비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법인세는 33%가 떨어졌다.

중앙정부의 석유산업에 대한 특별정책은 다음과 같다.

- 일년에 두번 기업들에게 토지공개를 하는 것을 포함한 해양개발전략
- 개발의 위험을 인정하는 부가가치세의 대체와 생산기초세의 폐지를 가져온 석유자원임차세 (*the petroleum resource rent tax* : 이하 PRRT)개혁
- 국제가스시장의 자율화를 추구하는 천연가스전략의 발전
- 가격통제와 호주국내·외로의 제품판매규제를 없앤 원유와 LPG 시장의 비규제
- 법인세내에서 가속화된 가치하락과 투자허가협정 이러한 정책들아래서 석유산업은 과연 무엇을 이룩했는가?



1980년대 초반에 예상했던 것과 오늘날의 실제상황에 대한 비교는 석유산업의 성공이 얼마나 발전했는가를 보여줄 것이다.

1981년, 연방국가발전·에너지부는 지하자원에 대한 확장과 새로운 발견이 없는 가운데 1990년대 초반의 호주는 석유 소요량의 약 25%에서 30%가량을 생산할 것이라고 내다 봤다.

지난해 실제 원유와 콘덴세이트생산은 국내 석유수요의 83% 정도를 충당했다.

오늘날 석유와 가스생산은 수입의 대체와 수출로 인한 수입증가로 매년 약 80억 호주달러에 해당하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 호주는 이제 매년 10억 호주달러 이상의 석유교역을 하고 있고 1991년과 1992년에는 외형적으로 약 40억 호주달러의 가치를 가진 주요 석유수출산업을 가지고 있다.

투자를 끌어들이는 면에서는 앞으로 더 큰 발전이 예상된다. 대륙붕개발전략이 1990년 6월 발표된 이후로 전부 34건의 허가가 났다. 회사들은 6년 이상에 걸쳐 약 7억8천만 호주달러의 비용이 소용될 것으로 추정된 개발계획을 신청했다.

22개의 새로운 회사들이 허가를 얻기 위하여 연합입찰에 참가했다. 이전의 4개회사는 그대로 유지했다. 22개의 회사들중 10개는 허가를 얻는데 성공했다.

새로운 개발사업이 다음 4년 동안에 계획되었다. 특히 북서대륙붕과 Bass Strait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다.

전부 약 35억 호주달러가 소요되는 이들 투자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 제3LNG철도의 건설과 북서대륙붕가스사업의 확장으로 Goodwyn플랫폼(콘덴세이트와 석유 2억7천만 배럴, 가스 4tcf)의 설치
- Bass Strait내에 있는 Tuna와 Bream공구(석유 약 1억배럴 이상)의 콘크리트 플랫폼의 설치
- 바다위에서의 생산·저장·하역(FPSO)기구를 사용하는 Griffin공구(1억3천만배럴)의 개발

이들 사업들은 호주의 석유생산을 50% 가량 높힐 것으로 예상되고, LNG수출량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산업의 목표를 추진하는 정부의 참여없이 이루어졌다. 정부는 매년 시추되어야 할 개발유정의 갯수에 대한 어떤 독단적인 목표치 없이 단지 효과적인 목표달성에만 전념했다.

알맞은 정책은 적소에 있다는 확신하에 희미하게 보이던 상당한 양의 생산이 그 산업에서 실제로 달성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기록들이 계속될 것이란 것을 믿고 있다.

호주는 아직 개발이 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잠재석유의 완전한 개발을 위해서는 외국투자가 뒤따라야 한다.

1. 권리기간과 조건

연안지역을 넘어선 해양지역에서의 석유사업은 1967년의 석유(해양지역)법으로 알려진 연방법령에 의해 다루어진다. 그 법령은 석유자원의 규칙적인 탐사와 개발을 지원하고 정부와 회사들의 권리의 기본적인 틀과 권리와 책임을 제시하고 있다.

그 법령은 회사들에게 허용된 세가지 법령을 제공한다. 즉, 탐사허가, 임차계약, 생산허가이다.

탐사허가는 지질조사를 수행하고 한정된 지역에 시추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생산허가는 상업적인 발견이 이루어졌을 때 석유생산의 회복을 위하여 허가되어진다. 임차계약은 발견이 상업적인 곳이나가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이 기대되는 곳인가에 따라 허가를 해준다.

이렇게 허가되는 권리에서 벗어난 지역에서는 회사들에게 지질이나 지리적 또는 지학적 조사활동을 수행하는 특별한 권리가 허가될지도 모른다. 이것은 탐사허가를 위한 신청에 앞서 어떤지역을 탐사하는데 주어지는 보통의 권리이다.

(1) 탐사허가

탐사허가를 받는 수단은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업계획입찰방식이고 또 하나는 현금입찰방식이다. 예정된 토지는 보통 일년에 두번 공개된다. 캔버라에 있

는 연방산업에너지부의 석유국은 회사들에게 관심있는 지역을 제공하려고 노력한다.

사업계획 입찰방식이란 호주에서의 대륙붕탐사허가를 받는 전통적인 입찰방식이고 여러분야에서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방식하에서는 6년 이상의 탐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계획중 첫번째 3년은 “최소허가乾井사업계획(minimum guaranteed dry hole work programme)”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것은 단지 탐사본질(평가보다는)적인 사업만을 포함한다. 모든 사업은 허가의 취소를 피하기 위하여 완전해야한다. 신청자는 또한 두번째 3년에 적용하기 위하여 “제2기” 사업계획을 증명해야 한다.

사업계획허가는 초기에 6년의 기간으로 나오고 다음에는 매 5년 주기로 갱신된다. 각 갱신때는 허가지역의 50%는 양도되어 진다. 사업계획허가는 일반적으로 약 6천평방킬로미터 지역에 걸쳐 내준다. 그러나 신규참여지역은 3만5천평방킬로미터 까지도 가능하다.

현금입찰방식은 개발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주로 사용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석유가 부존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 지역과 발견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된 지역, 그리고 산업의 이윤이 높은 수준에 있는 지역이다. 탐사허가는 가장 높은 현금 입찰자에게 돌아간다. 어떤 탐사계획은 수행하는데 어떠한 혜택도 없으므로 성공적인 신청자는 허가범위내에서 투자를 행하기 위한 가장 적당한 시기와 시장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현금입찰허가도 또한 6년동안의 기간으로 나오고 기간이 끝나면 5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사업계획입찰방식과 마찬가지로 그 지역의 50%는 재계약때 넘겨주어야 한다. 현금입찰허가는 단지 한번만 갱신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더 이상의 현금입찰이 갱신할 때 필요하지 않다. 현금입찰허가는 일반적으로 2천평방킬로미터 이내에서 이루어진다.

(2) 임차계약과 생산허가

석유를 발견하면 인가자는 세부적인 사항을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임차계약이나 생산허가를 취득하기 전

에 인가자는 석유발견지역이 자기들의 공구임을 증명해야 한다. 이것을 ‘지역선언’이라고 부른다.

지역선언을 하고난 뒤 인가자는 더욱 더 정밀한 조사를 위하여 그 공구내의 탐사작업을 몇차례 더 수행할지도 모른다. 인가자는 또한 그 지역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

만약 상업적으로 괜찮은 발견이라면 인가자는 생산허가를 신청할 것이다. 보통 인가자는 지역선언을 하고 난뒤 약 2년후 생산허가를 신청한다. 사업의 세부계획과 소요경비 예상액을 제출한다. 생산허가는 21년간 주어지고 재계약은 또한 21년 주기로 갱신된다. 해안으로 석유를 수송하기 위한 송유관이 필요하고 이 송유관허가도 21년 주기로 인가된다.

만약 15년간 상업적으로 유용한 발견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지역이 비상업적 발견으로 밝혀질 때는 생산허가보다는 임차계약으로 신청이 바뀌어 질 것이다. 생산허가를 가진 인가자는 보통 2년간 임차계약을 유지하고 그 지역이 상업적인가 아닌가 하는 평가를 내린다.

임차계약은 5년동안 인가되고 재계약도 5년 주기로 이루어진다. 임차계약은 매번 재계약때마다 임차인이 그 발견이 앞으로 15년 이내에는 상업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2. 해양지역 공개

탐사허가를 위한 해양지역은 입찰에 붙여져 지난해 9월 24일에 끝났다. Malita와 Calder Grabens에 있는 북부지역에는 두개의 해양지역이 있다. 이중 하나는 Evans Shoals 가스 발견층을 가지고 있다. 서부지역에 다섯개의 해양지역이 공개되었다.

이들중 Bremer 층내에 있는 단일층은 아직 한번도 유정이 뚫린 적이 없고 지질조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신설 공개지역이다.

Carnarvon 층에서는 3/4년 동안 탐사되었는데 석유가 발견되었고, 그 지역은 북서 대륙붕과 Exmouth 층

의 동쪽 끝 사이에 위치해 있었다.

중앙 Carnarvon 층의 네개의 지역은 합리적으로 유정이 시추되었고, 네개의 단일층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구역이 나뉘어져 있어서 포기되었다. 이 지역은 북서 대륙붕 가스 생산허가 지역의 남쪽에 위치해 있고 부근에는 최근 몇해동안 매우 유용한 석유를 발견한 지역이다.

Ashmore 지역과 Vulcan 층의 Cartier 섬내에 또한 두개의 지역이 공개되었다. 이들중 하나는 Skua와 Challis 공구에 위치해 있다. 이들 지역 둘다 이전에 탐사된 적이 있지만, 더 많은 탐사가 필요하다.

3. 세금제도

정부는 개인이 확신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안정되고 효율적인 일정한 세금체계를 만들어 놓았다. 거기에는 석유특별세와 일반법인세 두 종류의 세금이 있다.

(1) 석유자원임차세

호주에서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탄화수소는 공공소유의 자원이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그들의 자원개발에 대한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수입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익에 기초를 둔 세금이, 가격과 비용이 변함에 따라 민감하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세금은 생산에 기초를 둔 것 보다 이익에 기초를 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필요에 따라 조건이 변화함으로써 계속적인 변화를 한다.

따라서 정부는 경쟁적이고 안정된 이익에 기초를 둔 석유자원임차세(PRRT)를 만들었다.

다음에 PRRT의 주요 내용을 간추렸다.

PRRT는 기본사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 그 사업에는 생산허가와 생산을 위해 필요한 그 지역 밖의 여러가지 시설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안정된 원유와 콘덴세이트, 천연가스, LPG, 에탄올을 포함하는 시장화된 석유상품들의 초기의 저장단계도 포함되어 있다.

- LNG 생산과 정유공장같은 공장생산활동은 제외된다. 순수입 사업의 40%의 비율로 부과되는 PRRT는 법인세 이전에 부과되고 법인세에서 공제된다.
- 탐사와 사업에 드는 모든 경비는 과세할 수 있는 모든 수령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즉, 모든 사업경비는 공제할 수 있다.
- 해상기지제거와 환경복구를 위해 사용된 경비는 그것을 시행한 그 해에 공제할 수 있다.
- 1990년 7월 이후에 발생한 공제되지 않은 개발 경비는 같은 회사에 의한 타사업으로 양도할 수 있어 세금이익이 돌아온다. 여러 회사가 하나의 사업에 참가하는 경우에도 또한 그 경비는 그 집단에 의해 추진되는 PRRT 적용의 타사업에 양도할 수 있다. 모든 공제되지 않은 경비는 합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제되지 않은 경비는 매년 정해진 비율로 합산되고 합산액은 몇년내에 과세할 수 있는 수령액에 대해 공제될 수 있다.

경비에 대한 합산율은 경비와 그 사업의 생산허가를 받은 날짜에 따라 결정된다. 생산허가를 받기전 5년이 지난 경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는 다음의 비율에 의해 매년 합산된다.

- 개발경비는 연방장기채권율(Federal Long term Bond Rate : 이하 LTBR)을 상회하는 15%
 - 여타 경비 역시 LTBR을 상회하는 5%
- 생산허가를 받기전 5년이 지난 경비는 GDP에 의해 나타난 인플레이션을 보정한 비율로 매년 합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사업으로 전가된 개발경비의 합산은 그 사업의 생산허가를 받은 날짜에 의해 정해진다.

재정비용과 사적인 로열티지급, 소득세의 부가가치세, 현금입찰비용, 확실한 간접관리비용등은 특별히 공제에서 제외된다.

(2) 법인세

법인세는 과세소득의 39%이다. 그러나 수상의 선거유세기간에는 33%로 낮아진다. 단, 5년전에는 호주에서의 법인세율이 49%이었던 적도 있었다.

어떤 자원에 대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수많은 특별공제가 석유개발활동에 적용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 석유개발 및 탐사경비의 즉각적인 공제
- 운영경비의 즉각적인 공제
- 석유자원임차세 채무의 공제
- 자산의 수명에 기초한 세율로써 플랜트에 대한 자본경비의 감가상각
- 1992년 2월 27일 이후에 획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율을 더 높여 적용한다.
- 10년 혹은 납세자의 선택으로 20년이 지난 장비를 똑같은 새 장비로 교체시 그에 따른 경비의 공제
- 선거유세기간 동안에 수상은 다음 2년동안의 투자에 대하여 20%의 세금공제 실시

정부는 세금공제에 적합한 경비에 관련된 환경을 만들므로써 산업으로 하여금 환경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해상기지의 제거와 오염과 낭비요소의 관리를

포함하는 적당한 지역의 재건에 드는 경비는 실시 당해에 공제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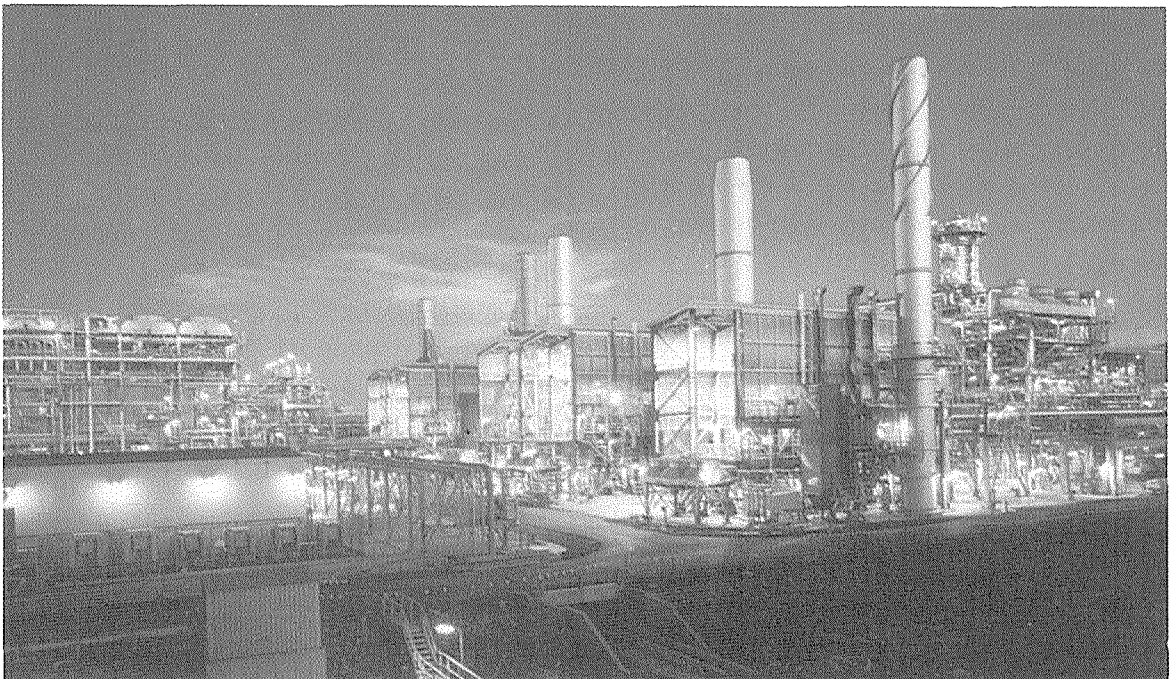
환경영향평가비용은 10년 또는 전사업기간동안 공제받을 수 있다.

(3) 여타세금문제

자본소득세는 1985년 9월 19일 이후에 획득한 자산으로부터 벌어들인 실제자본(인플레이션을 계산한뒤)에 적용된다. 이들 자본소득은 법인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호주는 이중과세의 제거를 목적으로 여러 나라와 포괄적인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었다.

극소수의 예외는 있지만, 호주는 국내거주자에게 전세계에서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단 그 소득에 대해 지불한 외국의 세금을 대하여는 지불유예기간을 준다.



북서대륙붕사업의 하나인 LNG 플랜트

4. 외국인 투자 정책

호주의 외국인 투자 정책은 호주사회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외국인 투자를 증대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왔다. 이러한 정책은 외국인투자가 이루어 놓은 실질적인 공헌을 인정하고 호주의 산업과 자원을 계속하여 개발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사실 석유개발에 대하여 호주의 참여수준을 계속해서 높히려고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외국회사들이 그들의 탐사활동에서 나오는 이권에 호주가 끼어드는 것을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긴다.

새로운 석유탐사권을 인가받은 외국회사들은 탐사권을 차지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정책을 지킬 필요가 없다. 더우기 석유탐사권에 따른 이윤을 얻기 위한 신청에는 *the 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Act 1975(FATA)*의 조사가 면제된다.

외국회사를 포함하는 석유개발은 정부의 외국인 투자정책의 통제를 받는다. 새로운 개발사업은 국익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면 보통은 허가된다. 석유생산과 탐사를 하는 회사들은 자산과 배당수익을 얻기 위한 신청은 *FATA*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진다. 석유생산과 탐사를 포함하는 회사의 자산과 배당을 얻기 위한 계획은 그것이 5백만 호주달러나 그 이상일 때는 *FATA*의 범주에 속한다. 5백만에서 5천만 호주달러 사이의

투자는 자동적으로 승인된다. 더 많은 투자는 일반적으로 국익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면 승인된다.

5. 결론

호주에는 투자를 하게 만드는 여러가지 매력적인 요인이 많이 있다. 이들중 하나가 산업에 대한 요구조건이, 위협을 인정하고 회사들에 대해 투자에 확신을 주는 공정하고 안정된 정부정책을 아래 이루어 진다는 것이다.

정부는 경제상황과 사회전체적인 분위기내에서의 기본적인 변화에 민감함에 틀림없다 할지라도 투자의 기본적인 목표가 위협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호주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회사들에게 제공한다.

- 예상부존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
- 탐사자료를 쉽게 열람할 수 있는 기회
- 장기간의 권리나 자격의 보장
- 국영석유회사가 없는 사기업개념의 석유개발
- 개발의 위협을 인정한 이익을 기초로 한 세금제도
-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장려책
- 세계 어디서든지 어떤 가격으로든지 자기들의 생산품을 팔 수 있는 자유

<PETROMIN 93, 10월호, 김영철 옮김>

원유도입단가

국내의 정유 5社들이 해외에서 1배럴의 원유를 들여오는 평균가격을 말한다.

흔히 국제유가가 떨어지면 곧바로 국내가격도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이 많으나 국내도입단가는 통관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원유를 유조선에 싣고 오는 기간(보통 40~60일)을 감안해야 한다.

또 국제유가는 어느나라에서 생산된 어떤 품질의 제

품인가에 따라 가격이 제각각이다.

예컨대 두바이油(아랍에미리트)는 오만油나 브렌트油등에 비해 현물시장가격이 1~2달러 가량 더 싼 가격에 거래된다.

따라서 원유도입단가는 국내정유사들이 어떤 종류의 원유를 어느가격(대부분 FOB기준)에 많이 들여왔느냐에 따라 좌우되고 여기에다 수송비용을 더해야 한다.

수송비용은 배럴당 1달러 안팎으로 보통 도입단가의 4~6%를 차지하고 있다.